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8월 23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형건 무역구제정책팀장(02-2110-5551), 이헌두 사무관(5559)
김남영 산업피해조사팀장(5561), 김광석 사무관(5562)

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

-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기준 완화('12.7월) 후 첫 지정사례 -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8.22(수)에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에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함

○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6.4월), 개정('12.1월), 개정시행령 시행('12.7월)

□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12년 상반기 A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됨

○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침

* '10년~'11년 시장점유율 변화(물량 기준): 국내산(84.76%→70.98%), EU산(5.65%→12.22%)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함

○ 금번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07년 제도 도입 시보다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

* 지원기준: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 ⇒ 10% 감소 ('12.7.18 개정시행)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함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지정	2	-	3	-	2	-	-	-	-	-	7	-
융자	1	200	3	500	3	850	1	200	2	500	6	2,250
상담	-	-	2	32	1	16	1	16	-	-	4	64

* '08년~'11년 총 7개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1개 업체는 지정 직후 파산하여 지원 실적이 없음

** '08년~'12년 6개업체에 융자자금 22억5천만원, 상담자금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45%p'로 '12.7월 기준 3.11%임

□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임

참고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 **(개념)** 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

□ **(요건)** ①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②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③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

*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

**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 ⇒ 10% 감소('12.7.18 개정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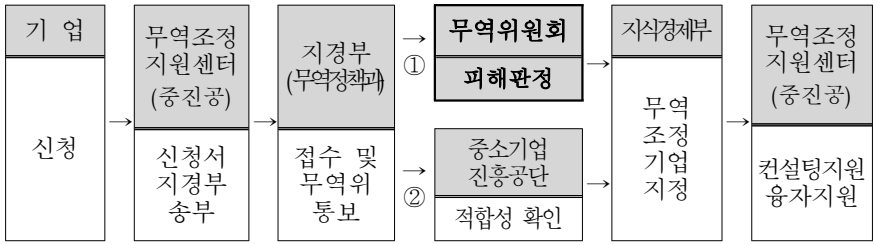
□ **(절차)** 기업이 지식경제부(무역정책과)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 ①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지경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

*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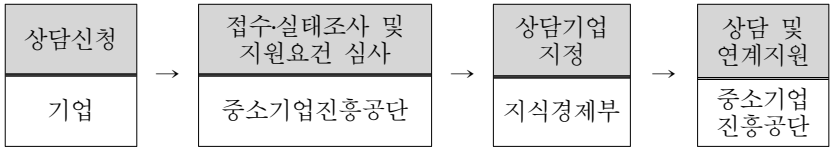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

- '무역조정지원' 신청시



* 요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청시



* 요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효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 자금의 80%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자금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융자: 시설(30억원내, 거치포함 8년)·운전자금(5억원내, 거치포함 5년)

* 기준금리('12.7월 기준) : 3.11%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사례 >

구분	품목	신청사유	수입국가	지정일	지원	
					융자(운전)	컨설팅
1	머루주	매출감소	칠레	'08.10.31	4.5억원	16백만원
2	돈육가공	생산감소	칠레	'08.12.15	1억원	16백만원
3	시계	매출감소	스위스	'09. 4 .7	-	-
4	돈육가공유통	매출감소	칠레	'09. 6. 4	3억원	-
5	염장고등어	매출및영업이익감소	노르웨이	'09.11. 4	3억원	16백만원
6	복분자주	매출및영업이익감소	칠레	'10.11.24	1억원	16백만원
7	골프웨어	매출및영업이익감소	베트남	'10.11.24	10억원	-
계					22억5천	6천4백만원

* 시계업체는 지정된 직후 파산하여 지원실적이 없음

참고2 무역조정지원과 타 중소기업지원 비교

구 분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자와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창업자	부품소재, 지식기반, 유통물류, 산업단지, 환경, 자동화 등 관련 업력 5년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지원한도	연간 30억원이내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다만,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내 포함)	연간 30억원이내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다만, 20억원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내 포함)	연간 30억원이내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다만, 2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내 포함)	연간 30억원이내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다만, 20억원이상 시설투자 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내 포함)
융자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45%p '12 3/4분기 3.11%(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05%p '12 3/4분기 3.61%(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45%p '12 3/4분기 3.11%(기준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 - 0.45%p '12 3/4분기 3.11%(기준금리)
융자기간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처리기간 (신청→융자 지원결정)	20일	30일	30일	50~90일

참고3 한·미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기업지원)

구 분		한 국	미 국	비 고
시행시기		2007.4.29	1962년('74년/'02년 개정)	
근거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06.4 제정)	무역법(Trade Act of 1974)	'62년 무역확대법
주관기관		지식경제부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상무부(DOC) 산하 경제발전청 (EDA : Economic Development Center)	미, 근로자지원은 노동부 고용훈련청
실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본부, 31개 지역센터, '07.4.25 개소)	전국 11개 무역조정지원센터 (TAAC) (본부 조직은 없고 각 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	7개 : 대학부설기관 4개(비영리)
지원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업력 2년 이상)	제조업(업력 2년 이상)	
지정요건		FTA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시장개방 정책고가정에서 수입증가가 원인이 되어 총 매출액(또는 생산액)이 5% 이상 감소하거나 25% 이상 차지하는 품목의 매출 생산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시책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소요비용의 50%까지 1사당 75천불 한도(업체당 평균지원액은 55천불 수준) *행정비용을 제;외한 직접지원 규모는 10,577천불 ('05년도)	미, 3천만 이하는 75%까지 지원
	융자	공자기금금리-0.45%(기준금리),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85년 법 개정으로 융자지원 중단	
지원절차	피해판정	무역위원회에서 30일 이내 판정(최대 30일 연장 가능)	기업은 무역조정기업 지원자격 인증을 TAAC에 신청하면 TAAC가 피해여불 및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EDA에 승인요청하면, EDA는 요건을 검토 후 승인 (신청시점부터 60일 소요)	
	무역조정계획승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평가		